교하신도시 A6블록 한라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

vivaldi 한라비발디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기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다음 기간동안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기 가능한 날부터 **1년간** 전매제한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기 가능한 날부터 **3년간** 전매제한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신도시내 위치한 학교시설은 향후 교육청 계획에 의해 건립될 예정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문의)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마이너스옵션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향후 3년 동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향후 1년 동안 전국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2011. 3.31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사항이 유예됩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파주시 주택건축과 - 45750호(2009. 11. 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A6블록 ▣ 대지면적 : 공동주택 - 56,704.00㎡, 근린생활시설 - 760.00㎡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13층~25층 아파트 12개동 총 9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분 - 29세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분 - 25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층수(최고층)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민영주택	22278-01	2009000808(01)	59.97	86	59.97	22.6091	82.5791	1.6761	26.6999	110.9551	37.8708	16
	22278-02	2009000808(02)	84.96A	380	84.96	27.4801	112.4401	2.3746	37.8259	152.6406	53.6519	25
	22278-03	2009000808(03)	84.96B	185	84.96	29.4627	114.4227	2.3746	37.8259	154.6232	53.6519	25
	22278-04	2009000808(04)	101.98A	160	101.98	30.3811	132.3611	2.8503	53.6438	188.8552	64.3999	24
	22278-05	2009000808(05)	101.98B	66	101.98	30.4881	132.4681	2.8503	53.6438	188.9622	64.3999	24
	22278-06	2009000808(06)	131.94	94	131.94	32.5780	164.5180	3.6877	69.4034	237.6091	83.3196	24
	22278-07	2009000808(07)	156.60	2	156.60	48.3850	204.9850	4.3770	82.3751	291.7371	98.8923	25
	22278-08	2009000808(08)	158.50	3	158.50	47.8400	206.3400	4.4301	83.3746	294.1447	100.0921	25
	22278-09	2009000808(09)	197.36	2	197.36	52.1300	249.4900	5.5162	103.8158	358.8220	124.6321	25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VAT포함)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층별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분양가격 건축비	분양가격 합계	계약금 1차(5%) (계약시)	계약금 2차(5%) 2010.1.15	중도금 1차(10%) 2010.10.15	중도금 2차(10%) 2011.1.15	중도금 3차(10%) 2011.4.15	중도금 4차(10%) 2011.9.15	중도금 5차(10%) 2012.2.15	중도금 6차(10%) 2012.5.15	잔금(30%) (입주지정일)
59.97 (구24)	1층	6	109,394	97,330	206,724	10,336	10,336	20,672	20,672	20,672	20,672	20,672	20,672	62,020
	2층	6	109,394	107,645	217,039	10,851	10,851	21,703	21,703	21,703	21,703	21,703	21,703	65,119
	3~4층	12	109,394	117,960	227,354	11,367	11,367	22,735	22,735	22,735	22,735	22,735	22,735	68,210
	5층이상	62	109,394	124,025	233,419	11,670	11,670	23,341	23,341	23,341	23,341	23,341	23,341	70,033
84.96A (구34A)	1층	14	154,979	152,719	307,698	15,384	15,384	30,769	30,769	30,769	30,769	30,769	30,769	92,316
	2층	15	154,979	173,122	328,101	16,405	16,405	32,810	32,810	32,810	32,810	32,810	32,810	98,431
	3~4층	38	154,979	188,425	343,404	17,170	17,170	34,340	34,340	34,340	34,340	34,340	34,340	103,024
	5층~15층	209	154,979	194,977	349,956	17,497	17,497	34,995	34,995	34,995	34,995	34,995	34,995	104,992
	16층이상	104	154,979	198,477	353,456	17,672	17,672	35,345	35,345	35,345	35,345	35,345	35,345	106,042
84.96B (구34B)	1층	6	154,979	152,719	307,698	15,384	15,384	30,769	30,769	30,769	30,769	30,769	30,769	92,316
	2층	7	154,979	173,122	328,101	16,405	16,405	32,810	32,810	32,810	32,810	32,810	32,810	98,431
	3~4층	18	154,979	188,425	343,404	17,170	17,170	34,340	34,340	34,340	34,340	34,340	34,340	103,024
	5층~15층	99	154,979	194,977	349,956	17,497	17,497	34,995	34,995	34,995	34,995	34,995	34,995	104,992
	16층이상	55	154,979	198,477	353,456	17,672	17,672	35,345	35,345	35,345	35,345	35,345	35,345	106,042
101.98A (구40A)	1층	6	186,026	191,884	377,910	18,895	18,895	37,791	37,791	37,791	37,791	37,791	37,791	113,374
	2층	7	186,026	212,414	398,440	19,922	19,922	39,844	39,844	39,844	39,844	39,844	39,844	119,532
	3~4층	14	186,026	238,077	424,103	21,205	21,205	42,410	42,410	42,410	42,410	42,410	42,410	127,233
	5층~15층	77	186,026	254,490	440,516	22,025	22,025	44,051	44,051	44,051	44,051	44,051	44,051	132,160
	16층이상	55	186,026	257,895	443,921	22,196	22,196	44,392	44,392	44,392	44,392	44,392	44,392	133,177
101.98B (구40B)	1층	3	186,026	191,884	377,910	18,895	18,895	37,791	37,791	37,791	37,791	37,791	37,791	113,374
	2층	3	186,026	212,414	398,440	19,922	19,922	39,844	39,844	39,844	39,844	39,844	39,844	119,532
	3~4층	6	186,026	238,077	424,103	21,205	21,205	42,410	42,410	42,410	42,410	42,410	42,410	127,233
	5층~15층	33	186,026	254,490	440,516	22,025	22,025	44,051	44,051	44,051	44,051	44,051	44,051	132,160
	16층이상	21	186,026	257,895	443,921	22,196	22,196	44,392	44,392	44,392	44,392	44,392	44,392	133,177
131.94 (구49)	1층	3	240,678	250,263	490,941	24,547	24,547	49,094	49,094	49,094	49,094	49,094	49,094	147,283
	2층	3	240,678	269,890	510,568	25,528	25,528	51,056	51,056	51,056	51,056	51,056	51,056	153,176
	3~4층	8	240,678	294,423	535,101	26,755	26,755	53,510	53,510	53,510	53,510	53,510	53,510	160,531
	5층~15층	44	240,678	314,706	555,384	27,769	27,769	55,538	55,538	55,538	55,538	55,538	55,538	166,618
	16층이상	36	240,678	320,260	560,938	28,046	28,046	56,093	56,093	56,093	56,093	56,093	56,093	168,288
156.60 (구62A)	최상층	2	285,662	477,061	762,723	38,136	38,136	76,272	76,272	76,272	76,272	76,272	76,272	228,819
158.50 (구62B)	최상층	3	289,127	478,639	767,766	38,388	38,388	76,776	76,776	76,776	76,776	76,776	76,776	230,334
197.36 (구75)	최상층	2	360,014	568,267	928,281	46,414	46,414	92,828	92,828	92,828	92,828	92,828	92,828	278,485

▣ 청약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 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적용이 되는 주택지역으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상한한 절과 해당매입 상한액은 아래와 같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향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용 소유권 이전등기비,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개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주택공급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단, 대출이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방장에 맞춰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잔금납부일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금공과 관련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2층 또는 1층~2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공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이는 별도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발코니확장 공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이는 개별 주택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일시 및 장소 : 2009. 12. 1 (화) 10:00~14:00** 당사 견본주택
- **특별공급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12. 1(화) 16:00** 당사 견본주택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당첨자명단에 이름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
- *** 개약제결일 : 청약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 특별공급 추첨소변는 주택공급(견본)주택 제외함. 제7항에 해당하는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순으로 당사 견본주택에서 직접 추첨함.**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행렬 특별공급 대상세대주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행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가 없음.
  - 중복청약 및 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부적격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동 · 호수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최 특별공급 간주), 부적격자로 판명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환불함.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명백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자는 및 계약체결자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며 공급받은 주택은 환수 조치함.
  -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청약 신청된 경우 취소 및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1)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2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1.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을 이루고 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만밥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입양증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당첨자 선정방법 : 3자녀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인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행렬 특별공급 세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나머지는 인접비율에 따라 세움특별시 가주자 40%, 신혼부부세시 가주자 10%의 비율로 각각 공급함.

● 공급세대 : 총 주택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총 29세대

● 3자녀 특별공급세대수

주택형(㎡)		59.97	84.96A	84.96B	101.98A	101.98B	131.94	156.60	158.50	197.36	계
공급세대수	경 기 도 (50%)	1	6	3	2	1	2	-	-	-	**15**
	서울특별시 (40%)	1	4	2	2	1	1	-	-	-	**11**
	인천광역시 (10%)	-	1	1	1	-	-	-	-	-	**3**
	합 계	**2**	**11**	**6**	**5**	**2**	**3**	-	-	-	**29**

● 3자녀 특별공급신청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3자녀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금급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1.26)**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 이혼 · 별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입양고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로 불가능한 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9.11.26**) 현재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제혼으로 생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3자녀 이상의 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들은 자녀입을 입증하여야 함.

●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배점표

평점요소	배점	배 점 기 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 녀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의 경우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비 고	※ (1), (2) : 주택공급신청자인 경우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본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명백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며 공급받은 주택은 환수 조치함.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원본상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9호상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의 2 기준에 따라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신혼부부 주택의 가주거면적은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가주거면적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인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입주자 선정방법

①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0조에 의하여 파주시 가주자 30% 우선공급하고, 70%는 수도권 거주자에 공급하며, 파주시 거주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 거주자에 포함하여 선정함)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2항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형(㎡)		59.97	84.96A	84.96B	101.98A	101.98B	131.94	156.60A	158.50B	197.36	계
공급세대수	파주시	8	-	-	-	-	-	-	-	-	8
	수도권	17	-	-	-	-	-	-	-	-	17
	소 계	25	-	-	-	-	-	-	-	-	25

● 자격입증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신청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금급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1.26)**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청약통장가입 해당은행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 이혼 · 별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입양고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로 불가능한 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신청시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인감 및 인감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확인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전문주택에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공조합에 발급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 후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은 공임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분양계약 이후에는 미이니스 옵션 추가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며, 미이니스 옵션 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3) 미이니스옵션으로 계약한 세대의 미이니스옵션 부분의 공사는 사용검사일로 및 잔금납부완료 이후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미이니스옵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단지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창고, **쓰레기 지정 이송센터 확장**가 설치될 예정이니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지층세대는 주장면 및 환경면이 침해될 수 있음.(단, 투입구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의 도로, 차량 진출입구, 비상차로, 보행자 출입구, 단지내 상가, 부대 복리시설, 단지외 어린이 공원 등에 인접한 동의 일부 세대는 차량, 보행자 및 학생 등에 의하여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의 악영향이 침해될 수 있으며, 차량진조등 및 야간조명 효과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코니 및 유리로 구성된 일부의 세대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시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건물주변에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기타 홍보물상 조감도,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공업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시전에 공고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사항에 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카달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일부 시설물 및 부수,단열, 마감 재질 등은 시공시 실제 사용,시공 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격등)가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분양일정정보정보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소유자로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주택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격,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물본 등 각종 계획도 및 조감도, 조경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 및 설치 결과는 시공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시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함. 단, 이 경우 시업주체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평면 및 마감자재 등을 시전에 촬영하여 본시에 보관 예정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이라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세대는 견본주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및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사실이며 공동주택과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대한 필지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 아파트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화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건폐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본 아파트의 명칭, 랜드시 외부세팅 및 외부디자인계획 등은 파주시 교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지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접수에 있어 **본인 이외의 사업체접수대행자 이용시 발생되는 제반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본인이 책임지게 되며,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 제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단, 금융신용불량기재자 등 계약자 본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금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수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출금액은 법률의 변경 및 향후 정부 부동산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